

content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종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

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

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

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는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

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

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

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는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

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

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

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

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

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

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

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

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

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

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

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

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는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

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

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

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

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

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

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의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의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의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

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

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

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는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

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

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

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는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

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

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

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

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

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

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

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

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

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가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 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 · 교수 · 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

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

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

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를 양도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꽤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를 양도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꽤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꽤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의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의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의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 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 · 교수 · 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

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

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

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 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 · 교수 · 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를 양도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실지거래가액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견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

消却

)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

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환주식

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

利

益

消却

)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

任

意

消却

)과 강제소각(

強

制

消却

)이 있다.

은행이나 신탁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 사채의 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이나 수익을 수익자에게 내주는 것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단독운용의 방식을, 불특정금전신탁은 합동운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원본 보전 및 이익 보전에 관한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들이 직접 주식과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상 손익계산을 말한다. 매출손익계산은 상품의 매출액에서 그 매출원가를 공제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오피스(

office

)와 호텔(

hotel

)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 실에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

을 말한다.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정

다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가 증과될 수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당해 연도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은 준 주택에 포함한다.

이용자가 출퇴근할 필요 없이 하루의 일과나 생활을 한 공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교수·화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수출입 상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체들도 분양받거나 임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특정한 소득에 일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라 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30%),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또는 25%), 분리과세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기본세율),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근거법은 소득세법이다.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

. 보복관세는 대개 각국이 국내법에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보복관세를 상한에 구애되지 않고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safeguard

: 긴급수입제한조치)도 모두 같은 성격을 띤다.

HBM

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차세대 메모리이다.

HBM

4는 이전 세대인

HBM

3E보다 두 배 많은 데이터 전송 통로를 가지고 있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HBM

3E는 12개의 DRAM 칩을 쌓아 24

GB

와 32

GB

용량을 지원하지만,

HBM

4는 16개의 DRAM 칩을 쌓아 64

GB

용량을 지원한다.

2024년 8월 현재 5세대 제품인

HBM

3E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6세대 제품인

HBM

4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트럼프 2.0'은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직을 맡으며 추진할 국내외 정책과 방향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용어는 단순한 재집권을 넘어,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정책 기조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변화된 정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 정책으로는 이민 규제 강화, 강세 정책 확대, 국경 장벽 재건, 그리고 보수적 가치 증진이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무역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 국제 기구와의 관계 재정립 등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2.0은 그의 첫 임기에서의 성과와 논란을 이어받으며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차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그럼, 기저 효과는 무엇을 의도한다는 것인가?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에 따라 주어진 경제상황을 달리 해석하게 되는 현상이다.

본래는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을 평가를 위한 것

당해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는 직전(기준)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에 의존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았다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해 연도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전년도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면, 반대로 낮다고 평가하게 된다.

가령, 초콜릿 가격이 시간 순서대로 시점 1에서 1,000원, 시점 2에서 3,000원, 시점 3에서 1,800원이며, 현재는 2,000원이라고 설정해 보자. 기준 시점을 1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2로 잡으면 현재 물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직전인 시점 3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기저 효과는 의도된 통계적 착시

기저 효과는 근본적으로 기준 연도도 선택에 따른 착시이니만큼,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도 경제 성장을, 기업 수익률 등 다양한 경제·경영 지표와 관련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착시는 내가 아닌 통계분석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의도된 착시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학의 유사 개념인 '반사 효과(
basking in reflected glory)' - 차단 효과(

in

reflected

glory

목차
취득가액 입증 요령

필요경비 입증 요령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때에 가장 애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거래 금액을 지금에 와서 입증한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입증 요령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취득가액 입증 요령

취득계약서를 분실했거나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본인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첫째, 실지 거래가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현재의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실거래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로 실지거래 계약서가 없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금액을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영수증, 전 소유자에 대한 확인 조사, 금융 증빙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이 따로 있다면 전 소유자에 연락하여 매매계약서 보관 유무를 확인해 보거나, 혹은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금융 증빙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도록 한다.

참고로 취득계약서를 양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취득가액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경인계약서가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 과세당국의 예규나 대법원 등의 판례에서는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경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국위의 절차에 따라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된다.

①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여기서 감정평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③ 환산가액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로 종양받은 아파트, 경매에 의해 낙찰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존재하므로 환산할 수 없다. 이외에 종전에 신고한 거래 가격이 있거나 거래 일방에게 탐문을 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취득가액 환산 사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용수 씨는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알아보고자 하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자.

- 양도 물건 : 단독주택
- 취득 일자 : 1985년 1월 1일
- 양도 일자 : 2014년 1월 31일
- 양도 가액 : 6억 원
- 취득가액 : 취득세 등(취득가액은 환산하기로 함)
- 양도 시 기준시가 : 4억 원
- 취득 시 기준시가 : 5,000만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30% 적용
- 양도소득세 세율 : 6~38%

(단위 : 원)

경제 성장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중산층 및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론.

예를 들어,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원래
trickle-down
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trickle-down

effect
는 '적하(滴下) 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이론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다.

또한
IMF
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2986.0>)

전세계 150여 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고려한 최초의
리더십
이론으로 피들러(
Fiedler,

F.

E.

)는
과업
의 성공적
수행

은 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과업이 수행되는 상황의 호의성(

favorableness

)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Fiedler
는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지향형(

task-oriented

)과 관계지향형(

relationship-oriented

)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업지향형이 리더십 행사의 초점을 과업 자체의 진척과 성취에 맞추고, 여기에 방해되는 일탈행위를 예방하거나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통제형 리더십(

controlling

leadership

) 스타일이라면, 관계지향형은 통솔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통해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 내려는 배려형 리더십(

considerate

leadership

) 스타일을 의미한다.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모델에서 리더의 성격특성은 8개 항목(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더십유형은 18개 항목(질문)으로 구성된

LPC

(

Least

Preferred

Co-Worker

) 설문에 의하여
측정
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은 임차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생기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같은 것, 임대차 계약 증서,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

확정일자

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목차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조 대리,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지? 물론 자동차 보험료나 유류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외부 공사가 많아 직원들이 근무 중 다치면 치료비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아, 그런 제 짧은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가. 결국 업무와 무관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 처리는 힘들다는 뜻이군. 그렇다면 보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좀 해주겠나?"

"……."

조 대리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고귀한 인적자원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보험을 든다. 따라서 이런 취지로 든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법은 기업이 보험 제도를 오남용하는 경우 그 비용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보장성보험료는 100% 비용처리 가능

일단 화재보험료나 자동차보험료 등 기업의 부동산이나 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보험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인 개인의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 부담할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료 처리는 다소 까다롭다. 자칫 기업의 돈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보장성보험이라란 상해나 질병 등을 위해 가입한 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을 그렇다면 혼행 세법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먼저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일단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종업원이 보험 수익자인 경우를 말함) 지출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지출한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편 보험을 든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면 이는 기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업원이 직접 받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회사(법인기업에 한함)가 대표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보자.

법인 기업의 임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기업의 비용지출을 마음대로 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과도한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도한 지출액이란 보험료 지출액이 사전

저축성보험료는 자산처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료는 기업의 자산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것으로 대부분 업무와의 관련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이다. 보장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러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무정점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저축성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 및 임원의 근로소득을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국세청의 해석에 의존해 풀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보자.

먼저, 보험료는 자산인가 비용인가

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추후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자산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료 지출액이 개인의 근로소득을 형성할 것인가

일단 보험수익자는 법인이라면 이는 개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더라도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개인은 안심해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과세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의 근로소득과 기업이 부담한 보험료는 먼저 비용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개인의 소득을 형성하는지를 추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참고로 기업이 지출하는 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처리 방식에 다음과 같은 국세청 예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험에 관련된 세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예규가 아닌 법으로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62, 2006. 8. 30]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의 하나. 사망의 경우 평균 임금 1천일분의 유족보상과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특약으로 추가 담보한다.